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발전용 댐 용수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4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발전용 댐 용수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5년 7월 8일 한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이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시·도지사 및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9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발전용 댐 용수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개정안은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가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9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⑧ (생략) <u><신설></u>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⑨ · ⑩ (생략)	⑩ · 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 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 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 제7항부터 제9항까지----- ----- ----- -----.

현행법에서는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서 생활, 공업, 농업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¹⁾,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또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다목적댐의 경우 댐사용권을 설정(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해당 댐의 용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³⁾,

발전용댐의 경우 사용료 징수 등 댐사용권 설정 규정이 없어 댐 용수를 발전 용도로만 사용하고 하천수로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임.

한편, 2023년 50년만의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공업용수 부족 사태를 겪으며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

-
- 1) 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⑦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한다.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댐관리의 위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을 때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었고, 충남 서산의 대산공단도 반복되는 가뭄으로 매년 공업용수 공급에 불안정한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⁴⁾.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24. 6. 현재 기준) 추진 중인 국가첨단산업단 15곳과 특화산업단 7곳이 조성되는 경우 하루 최대 공업용수 수요량이 2030년 712만 1,000톤, 2035년 749만 5,000톤, 2040년 771만 5,00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⁵⁾,

공업용수 시설(공급)용량은 2006년 355만 4,000톤에서 2022년 현재 384만 9,000톤으로⁶⁾, 공업용수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⁷⁾의 경우에도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저수량이 22억 1,500톤⁸⁾에 달하는 수력발전 댐의 발전용수를 발전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공업용수 공급 안정을 통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공장이 멈춘 이유, 물이 없어서라고? 공업용수 부족 문제, 새로운 대안은 방류수 재이용”, 국가물관리위원회, 2025. 4. 25.

5)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보고서, 3-6p, 환경부, 2024. 6. 17.

6) “반도체 경쟁 한창인데...공업용수 15년째 제자리”, 매일경제, 2024. 6. 7.

7)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이에 해당. 그 외에 사업자는 모두 소수력발전사업자

8)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운용 중인 수력발전소 10개소 저수량 총량

[표] 수력발전소 설비 현황⁹⁾[(주)한국수력원자력]

구분	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	칠보	보성강	과산	강림	강릉
설비용량(MW)	108 (471)	62.28 (271)	48 (271)	140.1 (471)	120 (471)	35.4 (371)	4.5 (271)	2.8 (271)	0.48 (371)	82 (271)
저수량 (백만㎥)	1,018	150	80	185.5	244	466	5.7	15.3	0.07	51.4
시설년도(년)	1944	1965	1967	1943 (2011)	1972	1945 (1965)	1937	1957	1978	1990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용댐에 저류된 물은 ‘하천수’로서 공공 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주식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익을 하천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¹⁰⁾,

현행과 같이 발전용수는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발전 후 방류된 하천수의 사용료는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7

9) <https://www.khnp.co.kr>(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홈페이지, 일반현황)

10)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한국전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주 형태이고, 수익발생 시 한국전력 주주에게 배당되는 형태임. 현재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이 위치한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하여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고 있음.